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고 마포문화체육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마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설 립(안 제3조)

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함

나. 재단의 사업(안 제4조)

-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
-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-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다. 기본재산의 조성(안 제5조)

-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
-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

마. 임 원(안 제7조)

-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

사1인으로 구성토록 함

-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
되,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함
-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

바. 이사회(안 제9조)

-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
- 이사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사. 운영재원(안 제10조)

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수입금
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함

아.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(안 제13조)

-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
인을 받도록 함

3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4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7. 5. 25 ~ 6.14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 6.14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
2.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3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 보급 및 조사·연구
4.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5.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4.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
5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6.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

7. 공고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재단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.

②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.

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④상임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,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의 당연직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한다.

③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) ①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.

제10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4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보고·검사·감사)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·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)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